

## ◎산림청공고 제2024-269호

「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6월 27일

산림청장

###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보전국유림에서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를 허용하고,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873호, 2024. 1. 2. 공포, 7. 3. 시행, 법률 제20079호, 2024. 1. 23. 공포, 7. 24. 시행)됨에 따라 벌통 등의 설치기준과 산림사업에 든 비용의 산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 정비(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)

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삭제

##### 나.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기준 규정(안 제5조제3항 신설)

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가 집단화된 보전국유림에 벌통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

##### 다. 국유재산의 대부·사용허가, 취득, 매각 및 교환 절차 정비(안 제6조제5항 삭제, 안 제17조의2 삭제, 안 제22조의2)

국유림 경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재편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비함

##### 라.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규정(안 제8조의2)

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방법을 구체화

##### 마. 법령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(안 제17조제2항)

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유림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매년 공고하는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로 명확히 함

#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17일까지 산림청장(참조 : 국유림경영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leebora@korea.kr

2) 주소 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1동 17층 산림청 국유림경영과

3) 팩스 : 042-472-3226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(전화 : (042) 481 - 409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